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: 김경훈 의원 외 50인

나. 의안번호: 제1578호

다. 발의일자: 2024.2.5.

라. 회부일자: 2024.2.7.

2. 제 안 사 유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법령과 맞지 않는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사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사항을 삭제함 (안 제4조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법령과 맞지 않는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2023년 2월 개정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2¹⁾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기업과 출자·출연 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차와 수소전기자동차) 구매 비율을 종전 80% 이상에서 100%로 상향한 바 있음.

다만,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안 제4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을 상향하고,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하이브리드 등)를 구매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)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(이하 “구매”라 한다)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. 다만,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.

또한, 단서 이행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에 있어서 시장의 경우는 협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바,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